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 신설〉

■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025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 목 차

|                                                                                         |   |
|-----------------------------------------------------------------------------------------|---|
| I . 제안경 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1.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 신설<br>(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br>신설) ..... | 3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문대림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5. 19.

다. 회 부 일 : 2026. 5. 20.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 및 복지증진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같은 법 개정을 통하여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 대한 운영 지원 근거와 함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바, 해당 특례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 특례 근거를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특례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반영함으로써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과 공동체 회복 및 평화·인권 가치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대림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Ⅲ. 검토의견

#### 1.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 신설

(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 <u>제주4·3희생자유족회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 대부·사용 근거 신설</u> |

현행 「국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은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원칙적으로 해당 재산가액의 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
|------------------------------------------------------------------------------------------------------------------------------------------------------------------------------------------------------------------------------------------------------------------------------------------------------------------------|
| <p style="text-align: center;"><b>「국유재산법」</b></p> <p><b>제32조(사용료)</b>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하 생략)</p> <p><b>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b> ①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감면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6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p> |
| <p style="text-align: center;"><b>「국유재산법 시행령」</b></p> <p><b>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b>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u>1천분의 50</u>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이하 생략)</p>                                                                                                                    |

또한,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는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면서,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한 [별표]의 개정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sup>1)</sup>.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유재산특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개별법에서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를 신설·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야 함.

이에 개정안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9024호)의 의결을 전제로, 국가가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기념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기념사업이란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추념행사 거행, 위령공원·위령묘역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함<sup>2)</sup>.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은

-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그 밖의 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대가(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
  2.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장기 사용허가등”이라 한다)
  3.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양여
-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 2) **제24조(기념사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희생자 및 유족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추념 행사의 거행
  2. 위령공원·위령묘역 조성 및 위령탑·사료관 건립
  3. 제주4·3사건 관련 유적의 보존·관리
  4. 제주4·3사건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5. 그 밖의 제주4·3사건 관련 기념사업

국가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등 국가유공자등 단체<sup>3)</sup>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을 유상·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sup>4)5)</sup>.

한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 및 제6조<sup>6)</sup>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요건으로 ① 특례목적의 공익에 부합 여부, ② 예산지원 등 다른 수단에 비해 효과적인지 여부, ③ 특례요건의 명확성과 구체성, ④ 존속기간의 적절성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무분별한 특례 신설을 방지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해당 기준에 따라 국유재산특례 신설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례 목적의 공익성) 개정안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 대하여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제주4·3사건 기념사업의

---

3)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4) 제13조의2(국유·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제16호

6)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
2.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나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특례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서 적절할 것
3.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및 적용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것
4. 국유재산특례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운용될 것

제6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유재산특례 신설 등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원활한 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특례 목적의 공익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특례 인정의 효과성) 현행 「4·3사건법」은 국가가 추념행사 등 기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sup>7)</sup>, 이와 별도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임.

#### [4·3사건법에 따른 치유사업 및 기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내역사업명                      | 회계/<br>기금 | 사업수행<br>방식 | 사업수행<br>주체  | 예산액(집행액)          |                  |       |
|---------------------------|----------------------------|-----------|------------|-------------|-------------------|------------------|-------|
|                           |                            |           |            |             | 2024              | 2025             | 2026  |
| 제주4.3실무위<br>운영            | 4.3희생자<br>추념식 및<br>기념사업 추진 | 일반<br>회계  | 보조         | 제주특별<br>자치도 | 1,400<br>(1,317)  | 1,196<br>(1,184) | 1,196 |
| 제주4·3진상<br>규명 및<br>명예회복지원 | 제주4·3유적지<br>복원 및<br>정비사업   | 일반<br>회계  | 보조         | 제주특별<br>자치도 | 1,938<br>(1,157)  | 1,660<br>(620)   | 870   |
|                           | 제주4·3희생자<br>유해발굴 사업        | 일반<br>회계  | 보조         | 제주특별<br>자치도 | 870<br>(852)      | 700<br>(670)     | 700   |
|                           | 제주4·3평화공원<br>활성화 사업        | 일반<br>회계  | 보조         | 제주특별<br>자치도 | 10,000<br>(6,094) | 5,980<br>(3,626) | 5,608 |

자료: 행정안전부

참고로, 현재 제주 4·3 사건 관련 단체 중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각종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포함하여 12개로, 이 중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 대한 2026년도 지방비 지원예산은 5억 7,300만원임.

7) 제24조(기념사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희생자 및 유족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5. (생략)

[제주4·3사건 관련 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단체명                         | 회원수   | 비영리법인<br>여부 | 제주특별자치도<br>보조금 지원예산 |      |      |
|-----------------------------|-------|-------------|---------------------|------|------|
|                             |       |             | 2024                | 2025 | 2026 |
| 제주4·3희생자유족회                 | 4,300 | 부           | 608                 | 609  | 573  |
| 제주4·3연구소                    | 180   | 여           | 130                 | 168  | 148  |
| (사)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 100   | 여           | 261                 | 238  | 285  |
| 제주4·3진상규명과<br>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 191   | 부           | 122                 | 106  | 96   |
| (사)제주민예총                    | 180   | 여           | 54                  | 62   | 57   |
| 백조일손유족회                     | 144   | 부           | 3                   | 3    | 3    |
| 7·7만병디유족회                   | 59    | 부           | 3                   | 3    | 3    |
| 현의합장묘4·3유족회                 | 12    | 부           | 8                   | 5    | 5    |
| 재일본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회          | 103   | 부           | 10                  | 10   | 15   |
| 제주도4·3사건을 생각하는<br>모임·도쿄     | 30    | 부           | 10                  | 20   | 16   |

자료: 행정안전부

(특례요건의 명확성·구체성) 「4·3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재산특례의 대상과 목적을 ‘제주4·3희생자유족회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특례의 적용대상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보임.

(존속기한의 적절성) 개정안은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로 하고 있는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개정 시 존속기한 설정 원칙<sup>8)</sup>을 고려할 때 존속기한은 적절하다고 보임.

8) 사용료 감면: 5년 / 양여·장기사용 허가: 8년

재정경제부는 국유재산특례 신설기준에 부합하므로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임.

한편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인 「4·3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90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4·3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함)

제25조의2(제주4·3사건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 각 호에 따른 기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비영리 법인 중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가 아닌 자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제2항에 따른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
| 별표                 | 별표     |                                             |                               |
| <u>&lt;신 설&gt;</u> | 연<br>번 |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 특례유형<br><br>존속기한              |
|                    | 223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제3항 | 사용료등의 감면<br><br>2031. 12. 31. |

|              |
|--------------|
| 문 의 처        |
| 02)6788-5160 |